

KOSTI 24-N0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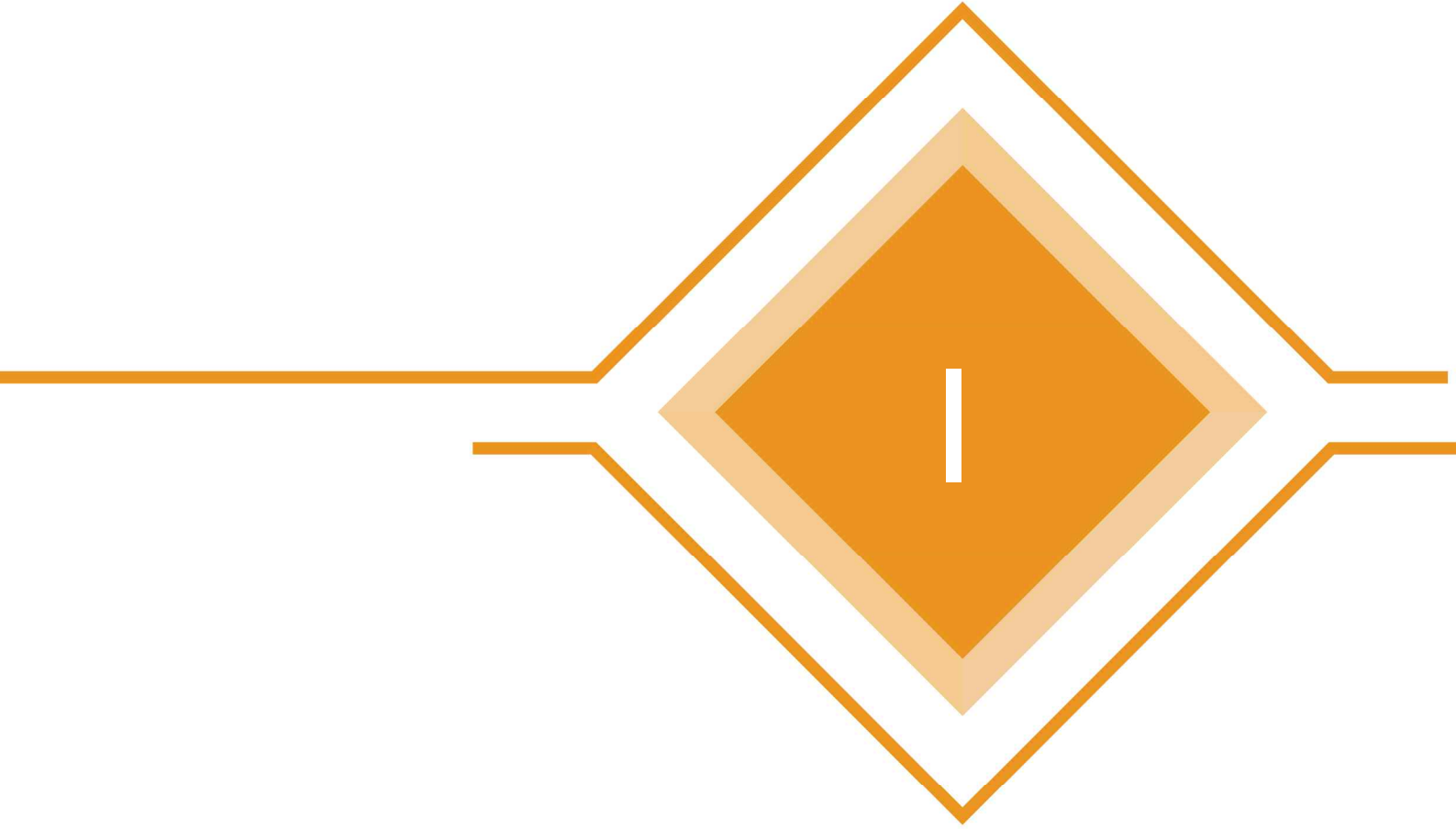
제33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에 따른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이행 가이드라인

2024

CONTENTS

I. 고시 개정 배경	1
1. 국제사회 對러/벨 수출통제 품목 추가	3
2. 기타 제도 개선	4
II. 對러/벨 상황허가 품목 추가	5
1. 상황허가 품목 추가 개요	7
2. 상황허가 품목 판정·허가 절차	9
가. 판정 절차	9
나. 허가 신청 절차	14
다. 허가 심사기준 및 처리	15
라. 무허가수출에 대한 집행	18
3. 신규 상황허가 품목 상세 설명	19
가. 기계	19
나. 전기전자	25
다. 철강	29
라. 화학	32
마. 자동차	35

4. 기타 對러 제재 주의사항 안내	36
가. 미 상무부 제재	36
나. 미 재무부 / 국무부 제재	37
5. FAQ	38
가. 관정 관련	38
나. 허가 관련	42
다. 기타	47
Ⅲ. 기타 개정사항	48
1. 전략물자 수출관리 절차 개선	50
2. 단순 오류 수정 등	50



고시 개정 배경

국제사회 對러/벨 수출통제 품목 추가

국제사회는 '22년 2월 24일 러-우 전쟁 발발 이후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이러한 對러/벨 수출통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함께 비전략물자에 대해서도 2차례 수출통제 품목 지정을 통해 국제사회의 對러/벨 수출통제에 공조하여 왔습니다.

러-우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국, EU,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은 기존의 무기 관련 품목 뿐만 아니라 일반산업용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통제를 확대하고 있으며, 우방국의 동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그동안 국제사회와 對러/벨 수출통제 조치를 긴밀히 조율해 온 우리 정부는 기존 798개이던 對러/벨 상황허가 품목을 1,159개로 확대하는 제33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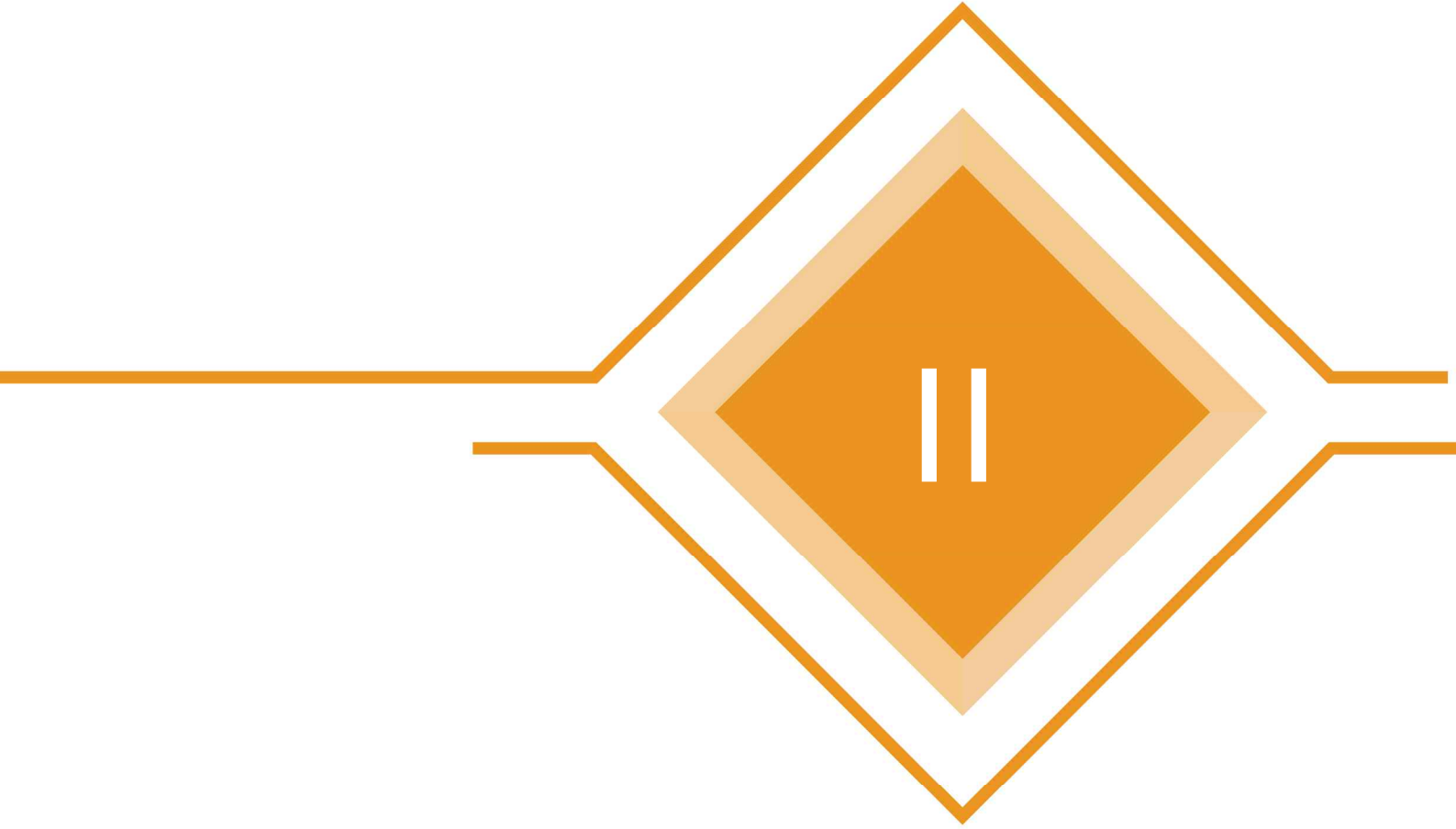
기타 제도 개선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對러/벨 상황허가 품목 추가 외에 기타 개정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해외 긴급구호에 대해 허가면제 근거를 신설하여 전쟁 및 자연재해 등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원자력 전용품목 관련 허가면제도 일부 확대하였습니다.

전략물자 수출허가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합니다. 산업용 전략물자 포괄허가를 받아 수출을 한 후 군용으로 사용됨을 알면서도 수입국 내 거래를 한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허가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방사청과 협의를 마친 경우 예외가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군함설계기술수출허가 제도를 신설하여, 군함설계 감리업무 과정에서 수출되는 다수의 설계도면을 1건의 허가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對러/벨 상황허가 품목 추가

상황허가 품목 추가 개요

상황허가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지정한 전략물자는 아니나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대외무역법 제19조 3항에 따라 정부의 수출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러시아, 벨라루스로 수출시 상황허가를 받고 수출해야 하는 대상이 798개에서 1,159개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개정 전 798개	개정 후 1,159개
(현재) 전자, 조선, 산업·건설기계, 석유·가스 정제장비 등	(신규) 철구조물, 항공기부품, 건설중장비, 운반하역기계, 차량용 배터리, 이차전지 등

금번 추가된 품목은 생화학 첨단기술 분야가 12개, 일반산업품목이 670개 등 총 682개이며, 기존 일반산업품목 567개는 HS 6단위 246개로 통합 재편됩니다.

품목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전략물자 관련	109개	109개 (기존과 동일)
생화학·첨단기술	122개	122개 (기존과 동일) 12개 (신설)
일반산업품목	567개	246개 (HS 6단위로 통합) 670개 (신설, HS 6단위)
합 계	798개	1,159개

상황허가 품목의 해당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은 품명·기술사양 및 금액 기준에서 품명·기술사양 및 HS 6단위 코드, 배기량(승용차) 기준으로 변경됩니다.

품목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전략물자 관련, 생화학·첨단기술	품명(사양)	품명(사양)
일반산업품목		HS 6단위 코드
승용차	미화 5만불 초과	배기량 2,000CC 초과

특히, 일반산업품목의 경우 기존 품명(사양) 기준으로 통제되었으나, 미국, EU, 일본 등 공조국들이 적용 중인 HS 6단위 기준으로 변경하여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다만, 승용차는 배기량 2,000cc 초과로 통제기준이 변경되면서 배기량 2,000cc 초과에 해당되는 HS 10단위 코드로 통제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품명·기술사양 기준 통제품목 예시 >

번호	대상품목	상세사양	Description	별표 2의 관련 품목	HS code	수출 지역
1	전자 장치	별표 2 3A001 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전자 장치 및 "구성품"으로서 다음의 것	Electronic devices, and "components" not controlled by 3A001.	-	-	러시아, 벨라 루스
	마이크로 프로세서, 마이크로 컨트롤러	a. "마이크로프로세서 마이크로 회로", "마이크로컴퓨터 마이크로 회로" 마이크로 컨트롤러 마이크로 회로로 다음의 것:	a. "Microprocessor microcircuits", "microcomputer microcircuits", and microcontroller microcircuits having any of the following:	3A001.a.3	-	러시아, 벨라 루스
		a.1. 5 GFLOPS 이상의 성능 속도와 32 비트 이상의 접근 폭을 갖는 산술 논리 장치:	a.1. A performance speed of 5 GFLOPS or more and an arithmetic logic unit with an access width of 32 bit or more:			
		a.2. 25 MHz 를 초과하는 클럭 주파수 속도: 또는	a.2. A clock frequency rate exceeding 25 MHz; or			
a.3. 하나 이상의 데이터 또는 명령 버스 또는 직렬 통신 포트가 "마이크로프로세서 마이크로 회로" 사이에 2.5 Mbyte/s 의 전송 속도로 직접 외부 연결을 제공하는 것	a.3. More than one data or instruction bus or serial communication port that provides a direct external interconnection between parallel "microprocessor microcircuits" with a transfer rate of 2.5 Mbyte/s;					

< HS 6단위 코드 기준 통제품목 예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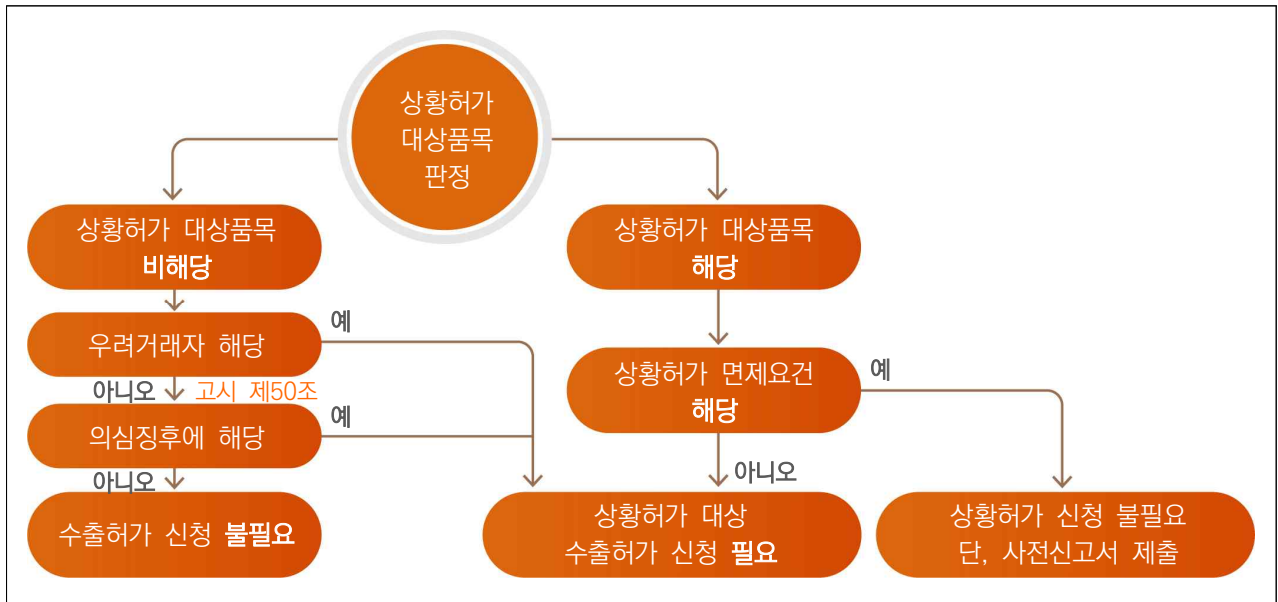
번호	대상품목	상세사양	Description	별표 2의 관련 품목	HS code	수출 지역
						루스
244		내화점토(하소한 것과 상관없음)	Fire Clay, Whether or Not Calcined	-	2508.30	러시아, 벨라 루스
245		멀라이트	Mullite	-	2508.60	러시아, 벨라 루스
246		샤모트 또는 다이나스 어스	Chamotte or Dinas Earth	-	2508.70	러시아, 벨라 루스
247		석회석 용제, 석회나 시멘트 제조용 석회석과 그 밖의 석회질의 암석(또는 토양 개량용)	Limestone Flux: Limestone and Other Calcareous Stone, of A Kind Used for The Manufacture of Lime or Cement (Or for Soil Improvement)	-	2521.00	러시아, 벨라 루스
248		산화알루미늄[인조 커런덤은 제외]	Aluminum Oxide, Except Artificial Corundum, Nesoï	-	2818.20	러시아, 벨라 루스

< 승용차 통제품목 예시 >

번호	대상품목	상세사양	Description	별표 2의 관련 품목	HS code	수출 지역
1036		설상(雪上)주행용 차량, 골프용 차와 이와 유사한 차량	Passenger Motor Vehicles Specially Designed for Traveling on Snow: Golf Carts and Similar Vehicles.	-	8703.10	러시아, 벨라 루스
1037		승용자동차 신차(불꽃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을 갖춘 것으로서 실린더용량이 2,000cc 초과 3,000cc 이하인 것)	Passenger Motor Vehicles with Spark-Ignition Internal Combustion Reciprocating Piston Engine, Cylinder Capacity Over 2,000 cc But Not Over 3,000 cc	-	8703.23.9 010	러시아, 벨라 루스
1038		승용자동차 중고차(불꽃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을 갖춘 것으로서 실린더용량이 2,000cc 초과 3,000cc 이하인 것)	Passenger Motor Vehicles with Spark-Ignition Internal Combustion Reciprocating Piston Engine, Cylinder Capacity Over 2,000 cc But Not Over 3,000 cc	-	8703.23.9 020	러시아, 벨라 루스

상황허가 품목 판정·허가 절차

〈 상황허가 품목 판정 및 허가 절차도 〉



가. 판정 절차

상황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판정이 필요하며, 상황허가 대상품목 판정을 위한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상황허가 대상품목의 확인은 전략물자관리원에 의뢰하여 확인하는 전문판정과 무역거래자가 스스로 확인하는 자가판정이 있습니다.

전문판정은 무역거래자가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전략물자관리원에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해당하는지 의뢰한 후 해당될 경우 상황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자가판정은 무역거래자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의2를 참고하여 상황허가 대상품목을 스스로 확인한 후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에 판정 결과를 등록하고 해당될 경우 상황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1) 전략물자관리시스템 가입방법

먼저,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회원 가입을 해야 하며, 전략물자관리시스템 접속 후 우측 상단의 회원가입을 선택한 후 기업회원을 선택합니다.

일반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 전문판정 신청, 수출허가 등이 제한될 수 있으니 전문판정과 수출허가 등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업회원으로 가입이 필요합니다.

2) 전문판정 신청방법

전략물자관리시스템 가입 이후,

- ①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대한 판정도 일반 전문판정과 동일하게 첫 화면에서 “전문판정 신청” 항목을 선택합니다.
- ② “전문판정 신청”을 선택한 후 다음 화면에서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면 좌측에 “(상황)전문판정 신청”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항목을 선택합니다.

일괄신청은 산업용만 가능합니다. 군용은 단건신청을 이용해 주세요.

산업용 : 전략물자관리원

- 고객센터 (02-6000-6400)
- FAX (02-6000-6420)

* 원자력전용품목은 www.neps.go.kr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군용 : 방위사업청 기술심사과

- 화학, 추진제 (02-2079-6832)
- 총포, 방탄 (02-2079-6833)
- 총기, 광학 (02-2079-6836)
- 유도무기, 훈련장비 (02-2079-6837)
- 항공, 기동 (02-2079-6838)
- 탄약, 함정 (02-2079-6839)
- 통신전자, 기타장비 (02-2079-6829)

- ③ 1단계 기본정보 등록에서 업체정보 및 담당자 정보를 기재한 후 거래자정보 등록에서 수입국(이란, 시리아, 파키스탄, 러시아, 벨라루스 中 택1)을 반드시 선택해야 국가별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대한 전문판정이 가능합니다.

- ④ 2단계 품목정보 등록은 일반 전문판정의 품목정보 입력방식과 동일하게 작성하되, 무기구분 항목은 신청하는 품목이 속하는 수출통제체제에 따라 대량파괴무기(NSG, MTCR, AG)와 재래식무기(WA)로 분류되나 모르는 경우 필수 항목이 아니오니 그대로 두어도 무방합니다.
- ⑤ 3단계 신청서정보에서 1단계 기본정보 및 2단계 품목/기술 정보에서 기재한 내용을 확인 후 최종적으로 “신청서 제출” 버튼을 눌러 상황허가 대상 전문판정 신청을 완료합니다.

3) 자가판정 등록방법

상황허가 대상품목을 스스로 확인한 무역거래자는 상황허가 자가판정 결과를 전략물자관리시스템에 등록한 후 상황허가를 신청해야만 하며, 상황허가 자가판정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첫 화면에서 “온라인 자가판정 신청” 항목을 선택합니다.
- ② “(상황)자가판정 등록”을 선택 후 우측 화면의 주의사항을 확인합니다.
 - * 주의사항 : 상황허가 자가판정은 대외무역법 제20조제3항 및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13조에 따라 상황허가 대상품목(고시 별표2의2)을 신청인이 직접 판정하는 것으로서 판정 결과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는 바, 수출품목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담당자가 판정하는 것을 권고
- ③ 자가판정 결과 등록을 위해서 “온라인 자가판정 바로알기” 교육 동영상(25분 소요)을 시청합니다.
- ④ (상황)자가판정 등록은 1단계(기본정보 등록) → 2단계(품목/기술정보) → 3단계(신청서 정보)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 기본정보 등록에서 업체정보 및 담당자 정보를 기재한 후 거래자정보 등록에서 수입국(이란, 시리아, 파키스탄, 러시아, 벨라루스 中 택1)을 선택해야 합니다.
- ⑤ 2단계(품목/기술정보)에서는 고시 별표 2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신 후 그 결과와 품목 관련 정보들(HS번호, 용도 등)을 “품목정보”에 기재해야 합니다. 품목정보를 작성하신 후 품목의 매뉴얼, 카탈로그 또는 사양서 등 신청품목의 기술적 성능과 용도를 표시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 ⑥ 3단계 신청서정보에서 1단계 기본정보 및 2단계 품목/기술 정보에서 기재한 내용을 확인 후 최종적으로 “신청서 제출” 버튼을 눌러 상황허가 대상 자가판정 등록을 완료합니다.

(상황허가대상품목) 자가판정 등록

☛ > 판정/허가 신청 > 상황허가대상판정 > 자가판정 등록

1단계 기본정보 2단계 품목/기술정보 3단계 신청서정보

● 기본정보 등록

* 표시된 항목은 필수 입력하여야 합니다.

동영상 안내

업체정보 변경	사업자등록번호 *	<input type="text"/>	*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해주세요.
	상호 *	<input type="text"/>	* 업체명을 기재해주세요.
	무역업 등록번호	<input type="text"/>	* 무역업 등록번호를 기재해주세요.
	대표자 성명 *	<input type="text"/>	* 업체 대표자 성명을 기재해주세요.
	주소 *	<input type="text"/>	
	홈페이지 주소	<input type="text"/>	* 홈페이지가 있을 경우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해주세요.
	전화번호 *	<input type="text"/>	* 대표 연락처를 기재해주세요.
	FAX	<input type="text"/>	* FAX 번호를 기재해주세요.
	상호(영문)	<input type="text"/>	* 영문 업체명을 기재해주세요.
	대표자(영문)	<input type="text"/>	* 영문 대표자명을 기재해주세요.
주소(영문)	<input type="tex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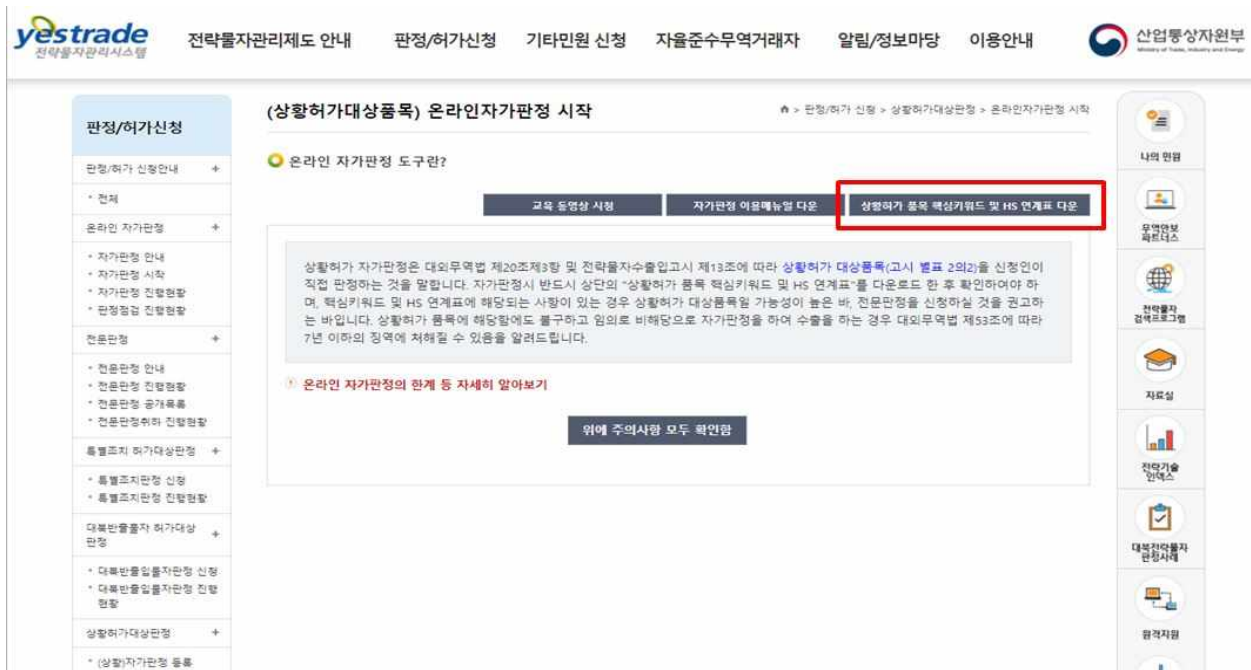
담당자	담당자 성명 *	<input type="text"/>	* 위임 받은 업체의 실무담당자 성명을 기재해주세요.
	담당자 성명(영문)	<input type="text"/>	* 위임 받은 업체의 실무담당자 영문 이름을 기재해주세요.
	담당자 전화번호 *	<input type="text"/>	* 연락가능한 담당자 연락처를 기재해주세요.
	담당자 휴대문	<input type="text"/>	* 연락가능한 담당자 휴대문 번호를 기재해주세요.
	담당자 E-mail	<input type="text"/>	* 발송가능한 담당자 이메일주소를 기재해주세요.
	SMS 참조수신	<input type="text"/>	* SMS 참조 수신자 휴대문번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예시) 010-0000-0000, 011-1111-1111 (로 구분)
	E-mail 참조수신	<input type="text"/>	* 참조 수신자 이메일 주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예시) aaa@aaa.com, bbb@bbb.com (로 구분)

● 거래자정보 등록

수입국 * 이란 시리아 파키스탄 러시아 벨라루스

4) 주의사항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략물자관리원은 “對리/벨 상황허가 품목 - HSK 연계표”를 제공하며, 연계표는 전략물자관리시스템에서 아래와 같이 확인(다운로드) 가능합니다.



“對리/벨 상황허가 품목 - HSK 연계표”는 ①HS코드만으로 상황허가 해당 여부가 결정되는 일반산업용품목 916개와 ②품명·기술사양 기준으로 해당 여부가 결정되는 243개 품목과 관련된 HSK 연계표로 구분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HSK 연계표 조회를 통해 ①HS코드만으로 상황허가 대상여부가 결정되는 916개 품목에 해당되는 경우 자가판정시 “해당”으로 등록해야 하며, ②품명·기술사양 기준으로 해당 여부가 결정되는 243개 품목에 해당될 경우에는 자가판정 “비해당”으로 등록가능하나, HSK와 품명·기술사양간 불일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가판정이 아닌 전문판정을 신청할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 다만, ①HS코드만으로 상황허가 대상여부가 결정되는 916개 품목인 경우에는 전문판정이 아닌 자가판정을 진행해도 무방

나. 허가 신청 절차

1) 상황허가 신청방법

상황허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정을 받은 무역거래자는 상황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상황허가 신청은 1단계(기본정보 입력) → 2단계(품목/기술정보 입력) → 3단계(신청서 전송)으로 이루어집니다.

① 판정/허가신청 메뉴에서 수출허가 신청을 클릭한 후, 상황허가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The screenshot shows the '수출허가 신청' (Export License Application) page. The main content area is a grid of license types. The '상황허가' (Situation License) icon, which features a green checkmark, is highlighted with a red border. Other icons include '개별수출허가 (산업용/군용)', '전략기술 수출허가', '사용자포괄 수출허가', '품목포괄 수출허가', '일반방산물자 수출허가', '주요방산물자 수출허가', '증계허가', '방산물자 증계허가', '변경허가', '반납허가', '기본수출허가(군용)', '국방과학기술허가', '경유관련허가', '다이아몬드원석수출', and '평화고시'.

② 1단계(기본정보 입력)에서 구매자, 최종사용자, 최종수하인, 제조자 정보를 입력한 후, 거래정보, 최종사용용도 등 주요 신청서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후 상황허가 신청 사유를 선택합니다.

③ 2단계(품목/기술정보 입력)에서는 품목정보(판정발급번호, HS번호, 통제체제, 물품명, 유/무상 여부, 단가, 수량, 중량, 형식 및 규격, 사용용도)를 입력합니다.

④ 3단계(신청서 전송)에서는 1단계와 2단계 신청정보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신청서 제출을 클릭하여 상황허가 신청을 마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2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물품의 경우) 또는 제2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6호(기술의 경우)까지 정하는 각각의 서류

다. 허가 심사기준 및 처리

1) 허가 심사기준

산업통상자원부는 상황허가 품목의 對러/벨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아래 사안별 심사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심사를 통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안별 심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對러/벨 수출이 금지됩니다.

〈 사안별 심사 대상 〉

1. 선박 및 항공기 안전
2. 민간 원자력 안전
3. 인도적 지원
 - * 의약품, 의료기기, 식료품 지원에 한정
4. 우리나라 또는 별표 6의 가 지역에 설립된 기업이 소유하거나 지배(전부 또는 공동 지배)하는 회사가 최종사용자인 경우
5. 별표 2의2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대해 아래에 해당하는 날까지 거래계약 체결이 완료된 경우
 - * 통제번호 1~57번 품목에 대한 거래계약 체결이 '22년 2월 27일까지 완료된 경우
 - 통제번호 58~231번 품목에 대한 거래계약 체결이 '23년 4월 27일까지 완료된 경우
 - 통제번호 232~1,159번 품목에 대한 거래계약 체결이 '24년 2월 23일까지 완료된 경우

상황허가 심사시에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22조에 따른 개별수출허가의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 상황허가 심사 기준 〉

1. 전략물자 해당 여부
2. 수입국
3. 수입국의 기술수준과 군사·외교적 민감성
4. 민간부문에서의 사용 여부
5. 구매자, 최종수하인 및 최종사용자와 최종사용자가 서약한 사용용도의 신뢰성
6. 제3국으로 재수출 될 가능성
7. 수출자, 구매자, 최종수하인 또는 최종사용자가 우려거래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8. 국제기구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제1호~제7호의 사항에 대한 주의 필요성 제기 여부

2) 허가의 면제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해당되더라도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허가가 면제되며, 이 경우 허가기관의 장에게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지 1의4 사전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긴급 수리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기구, 부분품을 무상으로 수출하는 경우
2. 재외공관, 해외에 파견된 우리나라 군대 또는 외교사절 등에 송부하기 위하여 공용물품을 반출하는 경우
3. 수입한 물품등을 그 제조업체 또는 당초 수출자에게 반송하는 경우
4. 박람회, 견본회 또는 전시회 등에 출품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1년 이내에 재수입하거나 1년 이내에 해외 현지에서 폐기하는 경우.
5. 보정, 수리를 받을 목적으로 수출한 후 1년 이내에 재수입하거나 1년 이내에 해외 현지에서 폐기하는 경우 또는 검사, 시험을 받을 목적으로 수출한 후 5년 이내에 재수입하거나 5년 이내에 해외 현지에서 폐기하는 경우.
6. 외국인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당초 이전한 자에게 재이전하는 경우
7. 정부 및 국제기구 지원
 - * 대한민국 정부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화학무기금지협약(CWC),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대한 지원에 한정
8. 소비자 통신제품 거래
 - * 다음에 해당하는 제품에 한정

소비자 통신제품이란 일반인이 제한 없이 소매점 또는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구매가 가능한 제품을 의미하며, 허가가 면제되는 소비자 통신제품은 아래에 한정한다.

- (1) 컴퓨터(소비자용 태블릿, 노트북에 한정), 마이크, 스피커, 헤드폰
- (2) 모니터
- (3) 프린터
- (4) 키보드, 마우스, 관련 유사장치
- (5)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가입자 모듈(SIM) 카드
- (6) 바이러스 백신, 사용자 인증, 암호 관리자 등 소비자 정보보안 장비
- (7) 디지털카메라
- (8) 텔레비전 및 라디오 수신기, 셋톱박스
- (9) 녹음 장치
- (10) 제1호부터 제9호에 설명된 장비의 운반 케이스와 부속품

3) 허가의 처리기간

상황허가 처리기간은 상황허가 신청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이나, 다음을 위해 소요되는 일수는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1. 해당 품목에 대한 별도의 기술심사
2. 해당 품목의 수출에 관련된 행정기관과의 협의
3. 해당 품목 관련 국가와의 협의
4. 해당 품목의 현지 조사
5. 수출허가 심사를 위한 서류 보완
6. 해당 품목의 수출과 관련된 국제수출통제체제 회원국, 국제기구 등과의 협의

4) 허가의 유효기간

상황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다만, 수출자의 요청에 따라 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물품의 인도조건, 대금결제기간, 기술수출계약서상의 계약기간, 기타 거래상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수출자가 허가사항(수출허가 대상품목 및 최종사용자는 제외)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시 별지 제1호의6 서식에 따른 수출허가사항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경된 허가의 유효기간은 당초 허가의 유효기간과 같습니다.

라. 무허가수출에 대한 집행

1) 행정처분

상황허가를 획득하지 않고 무허가수출을 하는 경우, 대외무역법 제3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전략물자 수출입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법처벌

상황허가를 획득하지 않고 무허가수출을 하는 경우, 대외무역법 제53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가액 5배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황허가 위반 사례 〉

- ① 판정을 하지 않고 수출(A社)
 - :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을 통한 판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메모리’를 러시아로 수출
 - 대외무역법 위반, 행정처분 부과
- ② 정확한 확인없이 자가판정 ‘비해당’으로 판정하여 수출(B社)
 - : 상황허가 품목에 해당되는 ‘공작기계’를 러시아로 수출하고자 수출신고를 하였고 통관단계에서 세관으로부터 판정서 제출을 요청받자 정확한 검토없이 자가판정 “비해당”으로 입력 후 세관에 제출 후 수출
 - 대외무역법 위반, 행정처분 부과
- ③ 상황허가 판정이 아닌 전략물자 판정 후 상황허가 품목을 수출(C社)
 - : 통관단계에서 세관으로부터 판정서 제출을 요청받았으나, 상황허가 판정은 생략한 채 전략물자 자가판정만을 진행. 전략물자 비해당 판정 결과를 근거로 상황허가 품목인 ‘네트워크 컨트롤러 등’을 러시아로 수출
 - 대외무역법 위반, 행정처분 부과
- ④ 상황허가 품목 우회수출(D社)
 - : ‘항공기 부품’을 러시아로 수출하려다 통관단계에서 적발되어 수출신고를 취소했으나, 이후 동일·유사품을 러시아 인접국을 통해 우회수출 시도
 - 세관에서 정황 포착하여 압수수색 등 조사 후 검찰 송치

신규 상황허가 품목 상세 설명

가. 기계

내연기관

내연기관(엔진) 및 부품품, 수력터빈, 터보제트 등

엔진 등



▶ 통제번호 : 608~640번

▶ HS code :
8413.19, 8413.20, 8413.70
8413.81, 8413.91, 8414.10
8414.80, 8418.61 등

▶ 대상품목 :
엔진 및 부품품 : 608~621번

수력터빈, 터보제트 등 :
622~640번

수력터빈 등



사진출처: Pakwheels, depositphoto, Wikipedia, fizon

펌프 및 부품품

펌프 및 부품품, 공기조절기, 냉장(동)기구

펌프 및 부품품



▶ 통제번호 : 641~654번,
658~659번

▶ HS code :
8413.19, 8413.20, 8413.70
8413.81, 8413.91, 8414.10
8414.80, 8418.61 등

▶ 대상품목 :
펌프 및 부품품 : 641~652번,
658번

공기조절기 : 653~654번

냉장(동)기구 : 659번

공기조절기 **냉장(동) 기구**



사진출처: HAOSH pump, Kirlosker, eBay, India Mart

노(爐)와 오븐, 가열기



노(爐)와 오븐, 가열기 · 동결건조기 · 열교환기 등

노(爐)와 오븐



▶ 통제번호 : 655~657번,
660~666번

▶ HS code :
8417.90, 8419.50, 8419.90 등

가열기 · 동결건조기 · 열교환기 등



▶ 대상품목 :
노(爐)와 오븐 : 655~657번

가열기, 동결건조기, 증류기, 열교환기, 실험실 장비 : 660~666번

사진출처:Furnace Engineering, SAF THERM, ZIRBUS, Directindustry

산업기계



기타산업기계, 운반하역기계

기타산업기계



▶ 통제번호 : 667~676번,
677번, 678~698번

▶ HS code :
8421.21, 8426.19, 8426.91
8428.39 등

▶ 대상품목 :
원심분리기 : 667번

여과기 청정기 등 : 668~676번

분사기, 소화기 등 : 677번

호이스트, 크레인, 컨베이어 등
운반 하역기계 : 678~698번

운반하역기계



사진출처:Next Day Science, Jutao Machinery, Dongqi Crane, Henan Nybon Machinery



건설 중장비

건설중장비

건설중장비



- ▶ 통제번호 : 699~715번
- ▶ HS code :
8429.51, 8429.52, 8430.41
8431.41 등

건설중장비



- ▶ 대상품목 :
블도저, 스크래퍼, 셔블로더, 엑스
커베이터, 크레인, 천공용 또는 시
굴용 기계 등 : 699~715번

사진출처: Wikipedia, GlobalSpec, shutterstock.com, Britannica, SANY Group



주조기, 압연기

전로 · 주조기, 압연기

전로 · 주조기



- ▶ 통제번호 : 733~741번
- ▶ HS code :
8454.90, 8455.30 등
- ▶ 대상품목 :
전로 · 주조기: 733~736번

압연기



- ▶ 압연기 : 737~741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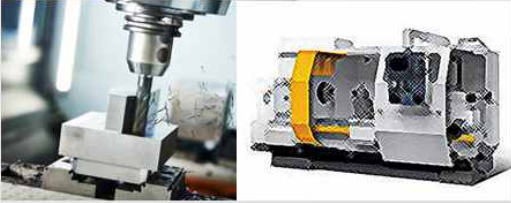
사진출처: Depositphoto, GlobalSpec, Hangzhou Roll Forming Technology, Mill roll

공작기계



공작기계, 절삭기계, 공작기계 부품

공작기계



절삭기계



▶ 통제번호 : 742~792번

▶ HS code :
8458.11, 8459.59, 8462.90
8466.93 등

▶ 대상품목 :
공작기계 : 742~772번

절삭기계 : 773~789번

공작기계 부품 : 790~792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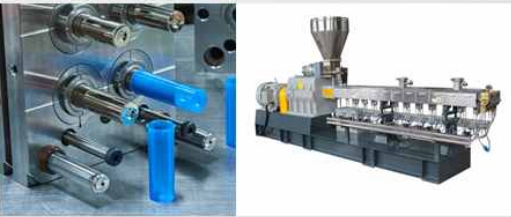
사진출처: GLOMACHT(www.glomacht.com), Ajax machine Tools(www.ajax-mach.co.uk), EMAG(www.emag.com)

성형기



성형기, 기타 기계류

성형기



기타 기계류



▶ 통제번호 : 809~823번

▶ HS code :
8477.80, 8479.82 등

▶ 대상품목 :
성형기 : 809~816번

산업용 로봇, 교반기 등 기타 기계:
817~823번

사진출처:: 3D SYSTEMS, Granuwel Machinery, Built In, INOXPA



밸브, 베어링

밸브, 베어링, 동력전달장치, 개스킷

밸브



베어링



동력전달장치



개스킷



▶ 통제번호 : 827~849번

▶ HS code :
8481.80, 8481.90, 8483.10
8483.20, 8483.30, 8483.40
8483.50, 8483.60, 8483.90
8484.10 등

▶ 대상품목 :
밸브 : 827~832번

베어링 : 833~840번

동력전달장치 : 841~847번

개스킷, 메커니컬 실 : 848~849번

사진출처 : indiamart, NSK, indiamart, DBK, seals and gasket



전동기, 발전기, 변압기

전동기, 발전기, 변압기

전동기



발전기



▶ 통제번호 : 858~878번

▶ HS code :
8501.53, 8502.11, 8503.00
8504.40 등

▶ 대상품목 :
전동기 : 858~861번

발전기 : 862~873번

변압기 : 874~877번

전자석 커플링 · 클러치 · 브레이크 : 878번

변압기



전자석 커플링 등



사진출처 : www.hyundai-electric.com, www.genex.com, www.kktr.co.kr, www.oleodinamicaborelli.com

용접기, 전화기, 증폭기



노(爐)와 오븐, 용접기, 라디에이터, 전화기, 증폭기

노(爐)와 오븐

용접기



전화기, 스마트폰

증폭기



▶ 통제번호 : 895~921번

▶ HS code :

8514.19, 8514.90, 8515.29
8515.31, 8515.80, 8515.90
8517.13, 8517.62, 8517.69
8517.71, 8517.79, 8518.40
8518.90 등

▶ 대상품목 :

노(爐)와 오븐, 용접기, 라디에이
터 : 895~911번

전화기, 증폭기 등: 912~921번

사진출처: www.snol.com, www.koreana.com, www.gntel.com, www.mini-circuits.com,

기관차, 트랙터



기관차, 트랙터, 철도용이나 궤도용 보수차량 등

기관차

트랙터



▶ 통제번호 : 1023~1035번

▶ HS code :

8601.10, 8602.90, 8604.00
8603.10, 8606.30, 8606.91
8606.92, 8606.99, 8701.21
8701.22, 8701.23, 8701.24,
8701.30

철도용이나 궤도용 보수차량 등



▶ 대상품목 :

기관차 : 1023~1024번

철도용이나 궤도용 보수차량 등 :
1025~1030번

트랙터: 1031~1035번

사진출처: www.trainspo.com, www.gbrx.com

나. 전기전자

컴퓨터

컴퓨터, 컴퓨터 주변기기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전자계산기 부분품 우편물 분류기



▶ 통제번호 : 793~803번

▶ HS code :
8471.50, 8471.60, 8471.70
8471.90 등

▶ 대상품목 :
컴퓨터 및 주변기기 : 793~800번

등사기, 전자계산기 부분품, 우편물 분류기 등 : 801~803번

사진출처: www.isock.com, www.casio.com, www.eulji.com

반도체 제조용 장비

반도체 제조용 장비

반도체 제조용 장비



반도체 제조용 장비



▶ 통제번호 : 851~855번

▶ HS code :
8486.10, 8486.20, 8486.30 등

▶ 대상품목 :
반도체 제조용 장비 : 851~855번

사진출처: www.asml.com, www.tel.com, www.komachine.com

일차전지, 축전지



일차전지, 축전지, 항공기 부품

일차전지



▶ 통제번호 : 879~894번

▶ HS code :
8506.60, 8506.90, 8507.10
8507.60, 8507.90, 8511.10
8511.30, 8511.40, 8511.50
8511.90 등

축전지



▶ 대상품목 :
일차전지 : 879~880번

축전지 : 881~887번

점화플러그 등 항공기 부품 :
888~894번

사진출처: www.rocket.com, www.duracell.com, www.xeno.com, 나무위키

기록매체, 송수신기, 무선기기



기록 매체, 송수신기, 무선기기, 관련 부분품

기록 매체



▶ 통제번호 : 922~941번

▶ HS code :
8523.29, 8523.49, 8523.51
8523.59, 8523.80, 8525.89
8526.91, 8528.59, 8529.10
8529.90 등

송수신기



무선기기



▶ 대상품목 :
기록매체 : 922~928번

송수신기, 무선기기, 관련 부분품
등: 929~941번

사진출처: www.thomsonbroadcast.tv, www.saionics.com



축전지, 저항기, 인쇄회로

축전지, 저항기, 인쇄회로, 전기회로 기기류

축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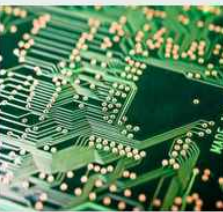
저항기



▶ 통제번호 : 945~969번

▶ HS code :
8532.29, 8533.29, 8534.00
8535.10, 8535.30, 8535.90
8536.41, 8536.50, 8536.69
8536.90, 8537.20, 8538.10
8538.90 등

인쇄회로



전기회로 기기류



▶ 대상품목 :
축전지 : 945~953번

저항기, 인쇄회로 : 954~955번,
956번

전기회로 기기류 : 957~969번

사진출처: www.polycase.com, www.ko.luban-electric.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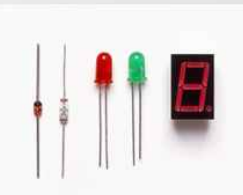
램프, 다이오드, 전자집적회로

램프, 다이오드, 전자집적회로, 전기기기

램프



다이오드



▶ 통제번호 : 970~1009번

▶ HS code :
8539.32, 8539.39, 8539.52
8541.41, 8543.30, 8543.70
8543.90 등

전자집적회로



전기기기



▶ 대상품목 :
램프, 다이오드 : 970~977번,
988~999번

전자집적회로: 1000~1004번

전기기기 : 1005~1009번

사진출처: www.industriallightandpower.com, www.lifewire.com, www.seesii.com

전선, 전극



전선, 전극, 절연용 물품

전선



전극



절연용 물품



▶ 통제번호 : 1010~1022번

▶ HS code :
8544.11, 8544.30, 8544.49
8544.60, 8544.70, 8545.90
8547.10, 8547.20 등

▶ 대상품목 :
전선 : 1010~1014번

전극 : 1015~1018번

절연용 물품 : 1019~1022번

사진 출처: www.austinmetalandiron.com, www.orientcarbongraphite.com, www.powerline.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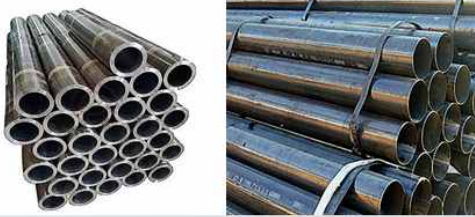
다. 철강

철강 및 비철금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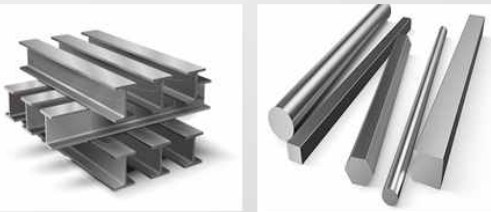


철이나 비합금강의 반제품, 평판압연제품, 봉·형강 등

철강 파이프



형강 / 봉강



▶ 통제번호 : 397번 ~ 463번

▶ HS : 7207.11 ~ 7216.99

▶ 상세사양 :

400번 : 철이나 비합금강의 기타 반제품(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25 이상인 것)

429번 :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 윗면모양이 아닌 것이며,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33번 :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 페인팅한 것·바니시한 것·플라스틱을 도포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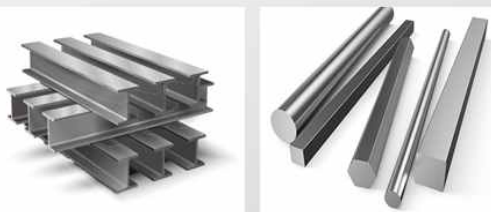
사진출처: 한국철강협회(www.kcsa.or.kr)

철강 및 비철금속



스테인리스강의 반제품, 일차제품, 평판압연제품, 봉 등

형강 / 봉강



평판압연제품



▶ 통제번호 : 464번 ~ 485번

▶ HS : 7218.10 ~ 7222.30

▶ 상세사양 :

464번 : 스테인리스강[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형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478번 :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이며 냉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두께 0.5밀리미터 이상 1밀리미터 이하)

483번 :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이며 냉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사진출처: 한국철강협회(www.kcsa.or.kr), 파이낸셜 뉴스(www.fnnews.com)

철강 및 비철금속



합금강 등의 반제품, 일차제품, 평판압연제품, 봉 등

평판압연제품



선재(Wire rod)



▶ 통제번호 : 486번 ~ 510번

▶ HS : 7224.10 ~ 7229.90

▶ 상세사양 :

492번 : 그 밖의 합금강(스테인리스강은 제외)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 냉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494번 : 그 밖의 합금강(스테인리스강은 제외)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 그 밖의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510번 : 그 밖의 합금강의 선(線)

사진출처:파이낸셜뉴스(www.fnnews.com)/SYSTEMATIC_GROUP(www.systematicd.com)

철강 및 비철금속



철강으로 만든 오일/가스 파이프, 관 연결구류, 구조물 등

유정 굴착 공사현장



유정 굴착 파이프



▶ 통제번호 : 511번 ~ 542번

▶ HS : 7301.20 ~ 7326.90

▶ 상세사양 :

512번 :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오일이나 가스 배관용 파이프라인

530번 : 철강으로 만든 비계, 차단기, 지주, 링도 받침에 사용되는 기구

531번 :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구조물, 이들의 부분품

사진출처:연합뉴스(www.ynacok)/Hunan Standard Steel(www.hu-steel.com)

철강 및 비철금속



비철금속 소재(구리, 니켈, 알루미늄 등)

알루미늄 호일



▶ 통제번호 : 543번 ~ 576번

▶ HS : 7407.21 ~ 7613.00

▶ 상세사양 :

545번 : 구리-아연 합금(황동)으로 만든 선

562번 : 니켈 합금으로 만든 관이나 튜브

571번 : 뒷면을 불인 알루미늄의 박 (두께가 0.2밀리미터 이하인 것)

사진출처: Ruyong Metal(www.rj-aluminum.com)

라. 화학

화학물질 또는 관련 산업의 제품



페인트, 잉크, 윤활유



▶ 통제번호 : 255번~266번

▶ HS code :
3208.10, 3208.20, 3208.90,
3209.10, 3209.90, 3210.00,
3215.11, 3215.19, 3403.11,
3403.19, 3403.91, 3403.99

▶ 대상품목 :
255번~260번 (HS 3208~3210)
: 페인트 및 바니쉬
(Paints And Varnishes)

261번~262번 (HS 3215)
: 인쇄용 잉크(Printing Ink)

263번~266번 (HS 3403)
: 조제 윤활유
(Lubricating Preparations)

기타 화학제품



윤활유 첨가제, 촉매, 화학화합물



▶ 통제번호 : 276번~285번

▶ HS code :
3811.21, 3811.29, 3811.90,
3814.00, 3815.11, 3815.12,
3815.19, 3816.00, 3818.00,
3819.00

▶ 대상품목 :
276번~278번 (HS 3811)
: 윤활유 첨가제(Additives for oils)

279번~282번 (HS 3814~3816)
: 유기혼합용제와 시너, 촉매
(Solvents, Thinner, Catalysts)

284번~285번 (HS 3818~3819)
: 전자공업용 화학화합물, 유압액
(Hydraulic Brake Fluids)



플라스틱 및 고무와 그 제품

수지, 셀룰로오스, 플라스틱 및 고무



melaminemouldingpowder



Plastics Europe

labsaco

▶ 통제번호 : 287번~295번

▶ HS code :
3909.20, 3909.39, 3909.40,
3909.50, 3912.90, 3921.19,
3926.90, 4002.11, 4002.19

▶ 대상품목 :
287번~291번 (HS 3909, 3912)
: 멜라민수지, 아미노수지, 페놀수지,
폴리우레탄, 셀룰로오스와 그 화학적
유도체

292번~295번 (HS 3921, 3926, 4002)
: 플라스틱, 고무 등



펌프와 그 부분품, 공기조절기

펌프와 그 부분품, 공기조절기



Cloudfront.net



Automation Direct

▶ 통제번호 : 641번~654번

▶ HS code :
8413.19, 8413.20, 8413.50,
8413.60, 8413.70, 8413.81,
8413.82, 8413.91, 8413.92,
8414.10, 8414.80, 8414.90,
8415.20, 8415.83

▶ 대상품목 :
641번~652번 (HS 8413~8414)
: 펌프와 그 부분품 (Pumps And
Parts)

653번~654번 (HS 8415)
: 공기조절기 (Air Conditioning
Machines)

노와 오븐, 열처리 장치



노와 오븐, 열처리 장치



▶ 통제번호 : 655번~666번

▶ HS code :
8417.10, 8417.80, 8417.90,
8418.61, 8418.69, 8419.19,
8419.33, 8419.40, 8419.50,
8419.60, 8419.89, 8419.90



▶ 대상품목 :
655번~657번 (HS 8417)
: 노와 오븐(Furnaces And Ovens)

658번~666번 (HS 8418~8419)
: 냉장/냉동기구, 동결건조장치, 열교 환기, 열가열기 등 열 변화에 따른 재료 처리 장치

원심분리기 및 여과기, 밸브와 그 부분품



원심분리기 및 여과기, 밸브와 그 부분품



▶ 통제번호 : 667번~676번,
827번~832번

▶ HS code :
8421.19, 8421.21, 8421.22,
8421.23, 8421.29, 8421.31,
8421.32, 8421.39, 8421.91,
8421.99, 8481.10, 8481.20,
8481.30, 8481.40, 8481.80,
8481.90



▶ 대상품목 :
667번~676번 (HS 8421)
: 원심분리기(Centrifuge) 및 여과기 (Filter)와 그 부분품

827번~832번 (HS 8481)
: 밸브(Valves)와 그 부분품

마. 자동차

차량, 차량부품

차량(승용자동차 2000cc 초과 등), 차량 부품

승용차 화물차

차량 부품

▶ 통제번호 : 1036~1069번

▶ HS code :

8703.10, 8703.23-9010,
8703.23-9020,
8703.24, 8703.32-9010,
8703.32-9020, 8703.33,
8703.40~90
8704, 8705, 8708.99, 8709 등

▶ 대상품목 :

승용차 : 1037~1048번

화물차, 특수차: 1049~1061번
1062~1064번

차량부품: 1065~1069번

사진출처: Toyota, VOLVO, 나무위키

KOREAN SECURITY AGENCY OF TRADE AND INDUSTRY

35

기타 對러 제재 주의사항 안내

가. 미 상무부 제재

국내법령에 따른 상황허가 통제 외에 미 정부의 수출통제 강화 조치는 우리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상무부는 Entity List 등 제재대상자를 추가 지정하여 러시아, 벨라루스에 대한 수출통제를 지속 강화할 전망이므로, 최종사용자 등 거래상대방이 제재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ntity List 등 우려거래자 해당 여부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우려거래자 검색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The screenshot shows the Yestrade portal interface. At the top, there are navigation links: "yestrade 전략물자관리시스템", "전략물자관리제도 안내", "판정/허가신청", "기타민원 신청",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알림/정보마당", "이용안내", and the "산업통상자원부" logo. Below the navigation is a banner with three main services: "온라인 자가판정", "전문판정 신청", and "수출허가 신청". Each service has a "신청하기" button. Below the banner is a login section with fields for "아이디" and "비밀번호", and buttons for "로그인", "인증센터", "회원가입", and "아이디/비밀번호찾기". At the bottom, there is a "공지사항" (Notice) section and a "자주 찾는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Use frequently used services) section. In the "자주 찾는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section, the "우려거래자 검색" (Sanctions Search) icon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② 단체 또는 개인명 등을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상황허가 신청여부 판단을 위해 우려거래자를 검색하실 분은 [여기](#) 를 클릭하세요.

우려거래자 검색 메뉴얼 다운로드

단체(개인)명	<input type="text"/>	국가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조회"/>	<input type="button" value="취소"/>	<input type="button" value="검색"/>
소재지	<input type="text"/>	별칭	<input type="text"/>			

! FULL NAME의 회사명(영문)으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 -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나. 미 재무부 / 국무부 제재

현재 미 재무부는 러시아, 벨라루스 제재의 일환으로 SDN 리스트(금융자산 동결) 및 Non-SDN 리스트(특정 금융거래 제한) 등을 발표하고 있으며, 아래의 사이트를 활용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제재리스트 검색 사이트 >

미 정부 통합 제재리스트 검색 사이트 주소

<https://www.trade.gov/consolidated-screening-list>

SDN 리스트에 등재된 제재대상자와 거래시 수출입 대금 결제가 제한될 수 있으며, 거래한 기업도 SDN으로 지정될 수 있는 바, 거래를 중단 또는 자제해야 합니다.

東亞日報

2023년 12월 14일 목요일 A08면 종합

美, 러에 반도체 장비 무단 수출한 한국인 첫 제재

부산 거주하며 러 기업 대리인 활동
美재무부 대리 제재 위반 명단 포함
서울세관, 관세법 위반 혐의檢송치

미국이 12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관련 제재를 단행하면서 한국인 이동진 씨(61)를 대상에 포함했다. 부산에 거주하는 이 씨는 러시아 기업 AK마이크로테크의 대리인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인이 미 재무부의 제재 명단에 오른 것은 처음이다. 제재 이행을 위해 동맹국에도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이날 대(對)러시아 제재를 위한 150개 기관과 개인을 제재하면서 이 씨를 포함했다. AK마이크로테크는 무기 생산에 필요한 반도체 기술을 외국에서 들여와 러시아 반도체 기업에 이전하는 기업으로, 올 6월 미 제재 대상에 올랐다. 재무부는 이 씨가 자신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한국, 일본, 미국에서 필요한 장비와 기술을 AK마이크로테크에 넘기는 것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국내에서도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13일 미 재무부의 제재 명단에 한국인이 처음 포함된 것에 대해 "해당 인사는 우리 관계당국에서 이미 대러 불법 우회 수출 혐의 등을 인지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세관은 이 씨를 허가 없이 러시아로 반도체 장비·부품을 수출했다는 혐의(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로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4월 산업통상자원부는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큰 첨단산업 물품 등 798개 품목 수출을 통제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대러시아·벨라루스 제재에 동참하는 차원이었다. 하지만 이 씨는 러시아 업체와 공모해 중국 루트를 활용하기로 한 뒤, 별도의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러시아에 수출이 금지된 반도체 생산 관련 장비 등을 중국을 통해 보냈다. 이후 이 장비들은 러시아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에 반도체 기술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OFAC은 이를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 씨를 제재하

며 시리아, 샌나워의 여권변환 등 시사저널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오르면 미국에 입국할 수 없고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된다. 이 씨와 거래하는 한국 및 미국 금융사 또한 미국의 2차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나 침략) 전쟁을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제3국 행위자에 대한 행동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실천한 것이며, 러시아의 군수품 조달 등을 노렸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도 "앞으로도 우회 수출 방지 등 기존 대러 제재 조치의 실효적 이행 노력을 강화하며 한미 간에도 계속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 국무부는 이날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에 사용된 선박 및 선박회사 등을 제재했다. 100여 개 기관과 개인은 물론이고 마리아호, 아쿠보비치호, 체르니셰프호 등 러시아 선박 3척과 이들 선박을 소유한 IBEX 해운 및 아지아 해운 등이 포함됐다. 마리아호 등은 올 10월부터 무기가 실린 컨테이너를 북한에서 러시아로 운송했다.

워싱턴=윤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신규진 기자

FAQ

가. 판정 관련

Q1. 제33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가 개정되면 우리나라에서 러시아·벨라루스向 수출 시 변경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기준에 한국에서 러시아·벨라루스向 수출 시 적용되는 수출통제 사항은 1)전략물자 수출통제 허가심사 강화하여 수출을 차단, 2)우려거래자로의 수출제한, 3)러시아·벨라루스向 상황허가 대상물품 지정(798개)이었습니다. 향후 제33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이 되면 3)의 상황허가 대상물품이 종전 798개에서 총 1,159개 품목(기술 포함)으로 확대됩니다.

금번 추가되는 품목은 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국제공조를 위해 무기 전용 가능성이 높은 건설중장비, 이차전지, 공작기계, 항공기부품 등이며, 향후 고시가 시행되면 해당 품목을 러시아·벨라루스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허가가 필요합니다.

상황허가 대상 품목의 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사안별 심사(case by case review)를 통해 허가 여부가 판단됩니다.

* ① 고시 시행 전 既계약분 수출시, ②100% 자회사向 수출시 등

추가된 상황허가 대상 품목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별표 2의2]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법령” >> “입법행정예고” 메뉴 참조

Q2. 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 시 추가된 상황허가 대상 품목의 해당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상황허가 대상 품목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전략물자관리원에 의뢰해 확인하는 ‘전문판정’과 무역거래자가 스스로 확인하는 ‘자가판정’이 있습니다.

전문판정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에서 판정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자가판정은 무역거래자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2의2 상황허가 대상품목을 스스로 확인하여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해당하면 전략물자관리시스템에 그 결과를 직접 등록하여야 합니다.

판정신청, 절차, 판정기관 정보 등 관련 세부 안내사항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 (www.yestrade.go.kr)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Q3.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대한 전문판정 신청시, 판정기관은 어디인가요? 제출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요? 판정 처리기간은? 판정 유효기간은?

판정기관은 전략물자관리원입니다. 판정 신청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에서 가능합니다.

제출하는 서류로는 ①매뉴얼, 상품안내서 등 성능·용도·기술 설명자료, ②그밖에 판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판정은 원칙적으로 15일 이내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련 전문가 자문, 신청서류 보완 등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판정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Q4. 자가판정의 효력은 전문판정의 효력과 동일한가요? 자가판정 과정에서 상황허가 해당 품목을 비해당으로 잘못 판정할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요?

자가판정과 전문판정 모두 효력이 동일하며, 자가판정은 전문판정에 비해 소요시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판정주체가 기업이므로 잘못된 판정 결과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을 허가 받지 않고 수출할 경우엔 무허가 수출이 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5. 수출물품의 HSK 번호로 러시아·벨라루스로의 상황허가 대상품목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요?

對러/벨 상황허가 품목은 ①HS코드만으로 상황허가 해당 여부가 결정되는 일반산업용품목 916개와 ②품명·기술사양 기준으로 해당 여부가 결정되는 243개 품목으로 구분됩니다.

① HS코드만으로 상황허가 대상여부가 결정되는 916개 품목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 별표2-2에 관련 HS 코드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HS 코드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②품명·기술사양 기준으로 해당 여부가 결정되는 243개 품목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가판정” 또는 “전문판정” 신청을 통해 해당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6. 향후 고시가 개정되면 기존에 발급받는 상황허가 대상품목 판정서는 유효한가요?

고시 개정에 따라 상황허가 대상품목, 통제기준 및 통제번호 등이 변경되므로 기존에 발급받은 상황허가 대상품목 판정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 관련 규정(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16조) : 통제품목의 통제기준 강화, 완화, 통제번호 변경 등 통제기준이나 통제번호에 실질적 변경이 있는 경우 그 개정 고시일에 해당 전문판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기존에 발급받은 자가판정서 또는 전문판정서는 고시 개정일 즉시 유효기간이 만료되므로 새롭게 판정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Q7. 상황허가 대상 품목이 구성품으로 포함된 완제품(완제품은 상황허가 대상 품목 비해당)을 러시아나 벨라루스로 수출하는 경우, 완제품을 상황허가 대상품목으로 간주하는지요?

부분품이 분리가 가능하여 분리후에도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하고, 부분품이 전체 완제품의 가격대비 10% 이상인 경우이거나, 부분품이 전체 제품의 성능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경우 부분품의 판정 결과에 따라 완제품도 판정결과가 결정됩니다.

Q8. YESTRADE에서 자가판정을 등록했습니다. 전략물자관리원에서 자가판정서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자가판정”은 판정 신청자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가판정은 등록 후 전략물자관리원이 별도로 심사 또는 승인하지 않습니다.

자가판정 결과로 발생한 문제(예: 상황허가 대상 품목 “해당”인 품목을 “비해당”으로 판정하셔서 상황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 수출을 하는 경우)에 대한 법적 책임은 수출자에게 있으므로 자가판정 시 신중한 판정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9. 잘못 판정한 자가판정서를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에 등록했습니다. 혹시 불이익이 있습니까?

판정을 잘못된 자가판정서(예: “상황허가 대상 품목 해당”인 품목을 “상황허가 대상 품목 비해당”으로 판정)을 자가판정서를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에 등록한 것만으로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잘못 판정한 자가판정서를 세관 등 외부에 제출하는 경우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10. 하나의 품목이 복수의 통제규정에 따라 통제될 경우(예시 : 선박 엔진은 통제번호 44.g번, 610번에 의해 복수 통제) 판정서는 어떻게 발급되는지요?

하나의 품목이 복수의 통제규정으로 통제되는 경우 전문판정 시 판정결과는 “해당”, 통제번호는 복수로 표기될 예정입니다.

* 예시(선박 엔진) : 상황허가 대상품목 : “해당” / 통제번호 : “44.g, 610번”

복수의 통제번호로 통제되는 경우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4]에 규정된 사안별 심사대상을 판별하는 기준은 앞선(숫자가 작은) 통제번호가 적용됩니다.

* 예시(선박 엔진) : 통제번호 44.g, 610번 중 44.g번이 적용 → 통제번호 1~57번에 해당되므로 거래계약 체결이 '22년 2월 27일까지 완료된 경우에만 사안별 심사대상

복수의 통제규정으로 통제되는 품목을 뒤(숫자가 큰) 통제번호로만 자가판정하고, 허가당국에 해당 자가판정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허가당국은 해당 품목에 대해 전문판정서 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허가 관련

Q1. 수출할 품목이 대량파괴무기나 재래식무기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등으로 사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황허가 대상 품목 판정이나 상황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러시아-벨라루스 수출 대상 상황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은 고시 [별표 2의2]에 규정되어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별표 2의2]는 대외무역법 규정에 따라 무기 전용 가능성이 있다고 고시된 품목입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벨라루스 수출 시에는 판정을 통해 [별표 2의2]의 상황허가 대상 품목에 해당되는지 반드시 확인 후 수출하셔야 합니다.

Q2. 러시아 또는 벨라루스로 수출할 때 상황허가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러시아-벨라루스로 수출하려는 물품등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2의3] 상황허가 면제대상(고시 제50조 관련)에 해당되면 상황허가가 면제됩니다.

또한 이번 제33차 고시 개정시 신설되는 [별표 24]에 명시된 상황허가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상황허가가 면제됩니다.

상황허가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자는 반드시 물품등을 수출하기 전에 Yestrade를 통해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지 1의4] 사전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별지 16] 수출거래보고서 불인정).

Q3. 수출할 품목에 대한 판정결과 별표 2의2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상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허가기관은 접수 받은 신청 건을 모두 심사하나요?

상황허가 품목에 “해당”될 경우 원칙적으로 對리/벨 수출이 금지됩니다. 다만, 허가기관은 아래 사안별 심사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심사를 통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안별 심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하지 않고 반려 처리될 예정입니다.

* 사안별 심사 대상

1. 선박 및 항공기 안전
2. 민간 원자력 안전
3. 인도적 지원
 - * 의약품, 의료기기, 식료품 지원에 한정
4. 우리나라 또는 별표 6의 가 지역에 설립된 기업이 소유하거나 지배(전부 또는 공동 지배)하는 회사가 최종사용자인 경우
5. 별표 2의2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대해 아래에 해당하는 날까지 거래계약 체결이 완료된 경우
 - * 1~57번 품목에 대한 거래계약 체결이 '22년 2월 27일까지 완료된 경우
 - 58~231번 품목에 대한 거래계약 체결이 '23년 4월 27일까지 완료된 경우
 - 232~1,159번 품목에 대한 거래계약 체결이 '24년 2월 23일까지 완료된 경우

Q4. 상황허가 신청요건에 해당되는 기존 체결 계약의 인정 범위는?

계약 체결시점이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 발효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제33차 고시 개정시 신설되는 [별표 24]에 통제번호별로 기존 계약으로 인정되는 시점이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수출하려는 물품의 물품명, 가액, 수량 등 구체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물품명, 가액, 수량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포괄적인 물품 공급 계약은 기존에 체결된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소비재 등 물품의 특성상 최종사용자가 특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종수하인과의 계약도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나, 반드시 허가당국에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Q5.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대한 상황허가 신청서, 심사부처는 어디인가요? 제출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요? 처리기간은?

허가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다만,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제28류 중 방사성동위원소의 유기 또는 무기화합물, 제84류 중 원자로 및 이들의 부분품에 대한 상황허가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허가기관이며, 최종사용자가 수입국정부, 군 관련 기관 및 방위산업체에 해당하는 군수품의 경우, 방위사업청이 허가기관이 됩니다.

허가 신청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에서 가능합니다.

제출하는 서류로는 ①수출계약서, ②전문판정서 또는 자가판정서, ③최종수하인 진술서, ④수출자 서약서, ⑤최종사용자 서약서, ⑥수입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공식문서, ⑦그밖에 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 구매자·최종수하인·최종사용자에 관한 설명자료: 회사이력, 사업내용, 매출규모, 종업원 규모, 지분관계(모회사 포함), 주요 고객사 등
수출물품에 대한 상세 설명자료: 최종사용자가 허가 신청 물량만큼 물품등을 수입하려는 사유, 수출물품의 사용용도 사용방법, 설치장소, 재고관리 등

상황허가는 원칙적으로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별도의 기술심사, 관계 행정기관 협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Q6. 제33차 고시 개정 전 상황허가서를 발급 받은 경우, 해당 허가서의 유효기간 내에는 수출이 가능한가요?

제33차 고시 개정전에 허가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상황허가서는 제33차 고시 개정후에도 해당 허가서의 유효기간 내에는 효력이 있으며, 해당 허가서의 유효기간내에 허가서에 기재된 물품등의 수량, 금액 등의 범위내에서 수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정서의 경우, 통제기준이나 통제번호에 실질적 변경이 있는 경우 고시 제16조제1항에 따라 그 개정 고시일에 해당 물품등에 대한 전문판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므로, 제33차 고시 개정전에 발급 받은 상황허가 대상품목 판정서는 제33차 고시 개정후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Q7. 전략물자에도 해당하지 않고, 상황허가 대상 품목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러시아·벨라루스로 수출이 가능한지요?

전략물자나 상황허가 대상 품목이 아닐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 따른 수출허가 대상에 해당되진 않습니다. 다만, 전략물자나 상황허가 대상 품목이 아니더라도, 구매자, 최종수하인 또는 최종사용자가 수출 물품등을 무기등의 제조·개발 등의 용도로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알았거나 그러한 의도가 의심되는 될 가능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상황허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50조 참고)

또한, 미국산 전략물자의 수출 등 미국의 수출통제 역외적용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지 등도 면밀히 살펴서, 필요시 미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미 상무부의 Entity List 외에도 재무부의 SDN List, 기타 국무부 제재대상자 등과 거래를 하는 경우, 우리 기업이 제재대상자로 추가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품등에 대한 수출통제와 별도로 러시아·벨라루스의 금융기관이 SWIFT에 배제되거나 주요국의 제재대상자로 등재되어 국제대금결제 안 될 수 있으므로, 거래은행 등에 금융거래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8. 기존에 러시아에 대하여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기존 허가를 활용하여 러시아 수출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지요?

러시아 수출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며, 수출자 스스로 미국 등 국제사회 제재 저촉 가능성을 판단하여 거래를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의 對러시아 수출통제 사항 이외에도 De-minimis Rule, FDP Rule 등에 따라 여전히 미 상무부 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며, 기존 거래상대방이 새롭게 Entity List 등으로 지정되거나, 거래은행 또는 선박이 신규 금융제재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9. 러시아에 수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러시아를 경유하는 경우 상황허가 대상 품목 판정이 필요합니까?

우선 수출자는 수출물품의 실제 최종목적지가 러시아인지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며, 우회수출의 가능성은 없는지 주의하셔야 합니다.

수출물품의 최종목적지가 러시아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러시아를 경유하였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판정 또는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상황허가 대상품목을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러시아로 수출할 경우에는 경유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10. 국내에 소재한 기업이 국내기업의 해외법인 또는 해외기업으로부터 상황허가 대상에 해당되는 물품을 조달하여 국내통관없이 해외현지에서 對러시아·벨라루스로 바로 수출할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국내에 소재한 기업이 국내기업의 해외법인 또는 해외기업으로부터 물품을 조달하여 국내통관없이 해외현지에서 對러시아·벨라루스로 바로 수출할 경우는 대외무역법상 “수출”에 해당되므로 수출하려는 물품이 전략물자 또는 상황허가 대상품목인 경우에는 정부의 수출허가가 필요합니다. 가령, 국내기업의 해외법인이 러시아·벨라루스로 수출을 하고 국내기업이 수출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출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기업의 해외법인이 국내에 소재한 기업과 무관하게 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상 “수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해외 현지 국가의 수출통제법령을 준수하여 수출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가령, 국내기업의 해외법인이 러시아·벨라루스로 수출을 하면서 수출대금도 해외법인이 수령하는 경우에는 한국법에 따른 수출통제 제도를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기타

Q1. 제33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 시기는 언제인가요?

고시 개정일은 현재 2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으나, 정확한 날짜는 의견수렴 검토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향후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전략물자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안내 예정입니다.

Q2. 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관련 추가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절차, 제재 현안 등 수출입기업의 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 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수출통제 현안 데스크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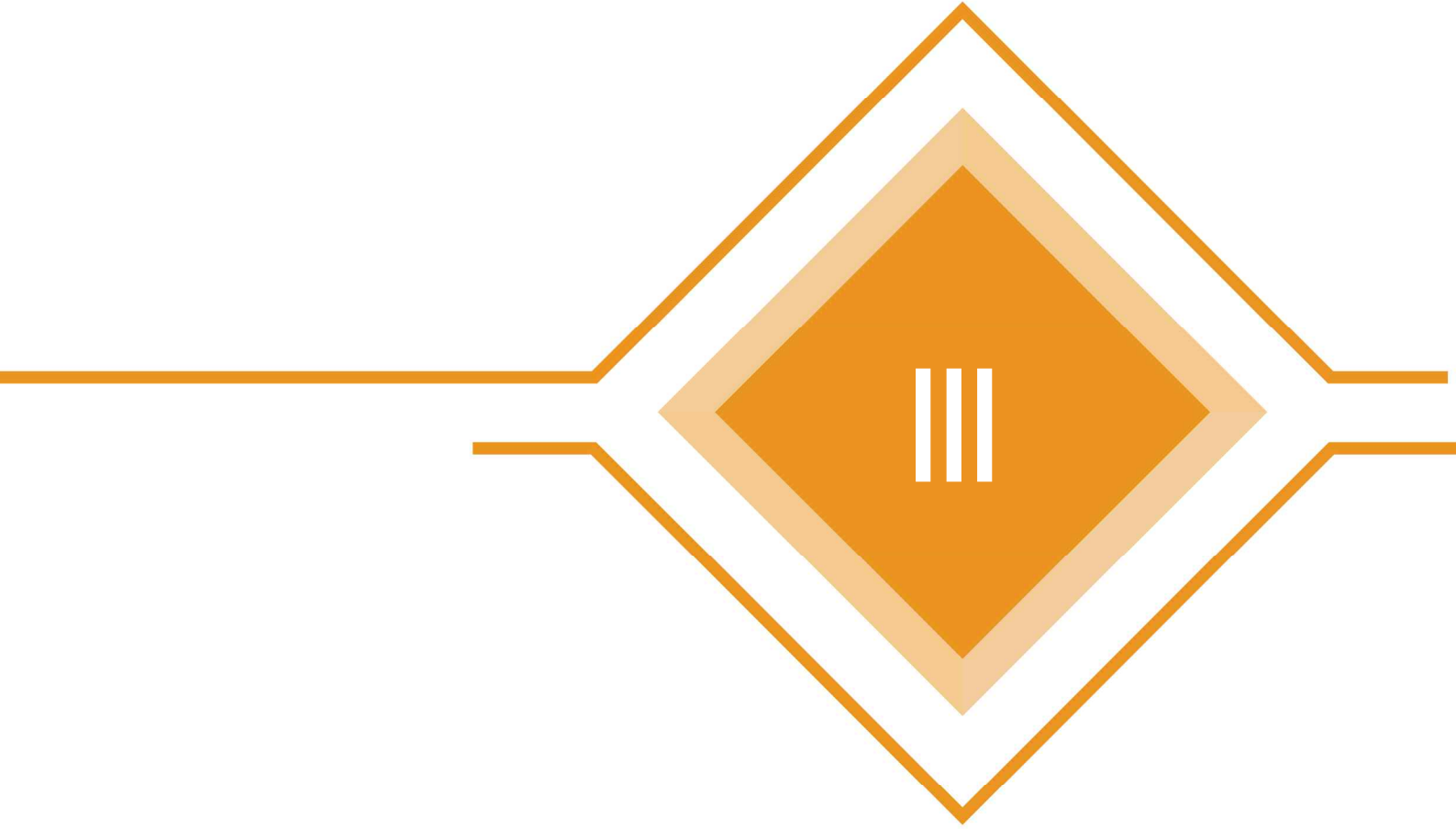
(품목) 02-6000-6496, 6497 수출통제 품목 분석, 관련 업계 동향 파악

(제도) 02-6000-6498, 6499 수출통제 현안·법제 분석 안내

또한, 우리나라의 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및 국제사회의 對러시아·벨라루스 최신 제재 사항의 신속한 전파를 위해 러시아 제재 홈페이지(russia.kosti.or.kr)을 별도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Q3. 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이외 러-우크라 사태 관련 지원기관 정보를 알 수 있나요?

분야	지원기관	지원내용
금융제재	금융감독원 (www.fcsc.kr) · 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 (국번없이) 1332→6번 · 팩스(02-3145-8662)	기업, 현지 주재원, 유학생 등의 對러 금융제재로 인한 금융애로 접수·해소
금융지원 및 대금결제	금융감독원 포용금융실 (02-3145-8409) 은행연합회 여신금융부 (02-3705-5425) 국내 거래은행 지점	국내은행의 러시아 현지법인과 본점 간 임시 결제라인을 개설하여 비제재 은행·비제재 품목에 대한 신속한 대금결제 지원
무역지원	KOTRA · 무역투자24 전담창구 1600-7119(2 → 4) 무역협회 (www.kita.net) · 긴급애로대책반 02-1566-5114	“무역투자24” 온·오프 전담창구 운영 진출기업 동향 점검, 비상연락망 가동 수출입기업 대상 긴급 애로접수 창구 운영



기타 개정사항

1

전략물자 수출관리 절차 개선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對러/벨 상황허가 품목 추가 외에 기타 개정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업용 포괄허가를 받아 수출한 후 군용으로 사용됨을 알면서도 수입국 내 거래를 한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방위사업청과 허가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협의를 마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군함설계기술수출허가 제도를 신설하여, 군함설계 감리업무 과정에서 수출되는 500여종 설계도면을 1건의 허가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다만, 조건 미이행 또는 사후관리 부실 확인시 군함설계기술수출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원자력전용품목에 대해 박람회 출품시 허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원자력전용기술 허가 면제 대상국을 규제완화국(20개국)에서 협정체결국(29개국, NSG 未가입국이나, 우리와 양자 원자력협정을 체결한 UAE, 사우디 등 9개국 추가)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해외 긴급구호에 대해 허가 면제 근거를 신설하여, KOICA 등에서 전쟁 및 자연재해 등 발생시 신속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단순 오류 수정 등

고시 본문상 ‘허가기관’, ‘수출허가기관’을 ‘허가기관’으로 일원화, ‘재수입’, ‘재반입’을 ‘재수입’으로 일원화하는 등 용어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고, 제50조에서 제53조까지 일부 조항(군함설계기술수출허가)이 신설, 추가됨에 따라 기존 제50조~제99조를 제54조~제103조로 조정하였습니다.

한편, 가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등급별 특례’의 편집 등을 수정하고, 용어 표기를 명확히 하고자 ‘수출허가신청서’, ‘사전신고서’, ‘최종사용자서약서’ 등 일부 서식의 표기 또한 수정하였습니다.

